
-공공기관의 자율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계획

2021. 8.



고용노동부

목 차

I . 평가배경 및 경과	1
II . 평가목적 및 개요	2
III . '21년 평가전략	3
IV . 세부 평가 계획	4
V . 평가결과 심의·활용 및 협조요청	15

I. 평가배경 및 경과

1 배경

- 공공기관 안전사고* 반복 관련 국민적 우려의 확산에 따라, 공공기관의 근원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구축**

* KTX 강릉선 탈선('18.12.8.), 태안발전소 청년노동자 협착('18.12.10.) 등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19.3.19.),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기획재정부, '19.3.28.) 등의 일환으로 추진

- 공공기관의 안전책임경영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을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안전중심 평가제도 마련

2 경과

- 자율안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19년부터 안전활동 수준평가 시행
 - '19년에는 정부 경영평가 대상 중 128개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2개), '20년에는 167개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2개, 기타공공기관: 39개소) 대상으로 P-D-C-A* 관점의 평가 실시
 - * Plan(계획 수립) - Do(실행 및 운영) - Check(점검 및 시정조치) - Action(개선)
 - '19년 본사위주 평가에서 '20년에는 현장작동성 평가('20.9~11월)와 본평가('21.1~2월)를 공공기관의 유형·특성별로 평가('20.1~2월)
- 평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검·진단 등의 목적으로 관계부처(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활용('21.4)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방향성 제시

II. 평가목적 및 개요

1 평가 목적

- 공공기관에서 ‘안전’을 제1의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공공기관에서 안전보건경영체제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 위험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 향상 도모

2 평가 개요

□ 평가 의의

- 공공기관 사업장*이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한 안전보건활동 및 수준에 대해 평가(고용노동부)

* 사업장 : 본사, 사업소, 지사, 도급.건설발주 현장 등

-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기획재정부)

□ 평가 수행 체계

- 고용노동부(주관) - 안전보건공단(수행)의 평가 체계

□ 평가 내용

- P-D-C-A 관점에서 현장작동성평가(21.下) 및 본평가(22.上)로 구분하여 공공기관 유형·특성별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Ⅲ. '21년 평가전략

1 전략체계

□ 공공기관 안전경영 정착을 위한 단계적 확대

비전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일터 조성

목표

'22년 까지 사고사망자 절반이상 감소

방침

안전 중심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강화

전문성·신뢰성 기반의
평가품질 유지

접근
전략

도입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본사

시스템 중점
(법준수, 대책이행)

공공 부문

1분기

성장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본사 + 협업 사업장(도급발주현장 포함)

시스템 중점 + 현장 중점
(시스템의 현장 적용·실행)

공공 부문 + 민간 확산

연중 상시

발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
기관

전체
공공
기관

전체 공공일터
(민간부분 선도)

2 추진방향

①

공공기관의 사고사망 안전활동 평가 커버리지 확대

·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확대(98개소→135개소)



· 보호대상 확대(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하청 사업주까지 포함)

②

법·제도, 그밖에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 고도화



· 건설공사 지표체계 개편

· 도급인 조치 의무 확인 강화

③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



· 공공기관 현황 실태조사

· 평가결과 환류

IV. 세부 평가계획

1 평가대상

□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안전활동 평가 대상

- ('21년) '19년 정부 경영평가 대상 평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19년: 128개소 → '20년: 167개소 → '21년: 169개소)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I형	II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	
169개소	10개소	26개소	12개소	41개소	41개소	39개소

□ 현장 안전활동 평가 강화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직영사업소 및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활동 평가 확대('20년 98개 → '21년 135개소)
 - 현장의 안전활동 작동 수준을 당해 연도(8~11월 중)에 평가 후, 시스템 및 현장활동 수준을 본평가 시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대상기관 현황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30개소)

유형	공공기관명
공기업 (36개)	공기업 I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26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금관리형 (12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 (94개)	위탁집행형 (41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소형 (41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21년도 평가대상 추가(강소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 안전보건공단은 평가수행 기관임을 감안하여 결측 처리

○ 기타공공기관(39개소)

유형	공공기관명
연구실 (39개소)	광주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코레일유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뇌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 향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확정(기재부)에 따라 연계 수행

□ 평가 체계

○ 평가는 본평가와 현장작동성평가로 구분 실시

- (본평가)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건설발주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발주 등이 이루어지는 특정 사업장 또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활동 이행 수준을 평가

□ 평가 절차

○ 당해년도에 현장작동성평가 후 익년도에 본평가 실시

① 현장작동성평가 ⇒ ② 본평가 ⇒ ③ 최종 평가결과 확정



○ 평가 세부절차

- (본평가) 기관별 평가일자 공지(12월) → 본평가 실시
- (현장작동성평가) 기관별 평가일자 공지(설명회 이후) → 기관별 평가대상 사업장(장소) 공지(평가 10일전) → 현장작동성평가 실시

□ 평가 시기

- 현장작동성평가는 기관 유형, 규모,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기간 산업형 및 건설발주사업장은 2일, 서비스집중형 1일 동안 실시
- (현장작동성평가) '21년 하반기 평가시기 중 1일 ~ 2일

구 분	평가시기 및 대상	
평가시기	'21년 8월 ~ 11월	
평가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도급조치 의무공사 포함)	건설발주사업장
평가일수	▼ 기간산업형 : 2일 ▼ 서비스집중형 : 1일	2일

※ (대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1항 1~5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위험도를 고려하여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관(100개 기관 135개소 현장)

- (본평가) '22년 상반기 평가시기 중 2일

구 분	평가시기 및 대상	
평가시기	'22년 1월 ~ 2월	
평가대상	2021년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 전체 공공기관	
평가일수	2일	

※ (대상) 평가대상 전 기관(169개 기관)

□ 평가반 구성

- 기관 유형, 규모,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5명의 안전전문가로 구성
 - (현장작동성평가) 지표 적용 유형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3명이내로 구성
 - ※ 기간산업형 및 서비스집중형 3명/반 운영(단, 건설발주 사업장은 공사규모에 따라 2명~3명/반으로 탄력적 운영)
 - (본평가) 현장작동성평가 지표범위를 고려하여 반별 4~5명*으로 구성
 - 현장작동성평가(직영 및 도급 사업장) 실시 대상기관은 4명, 미실시 기관은 5명이 수행
 - 고용노동부 1명, 외부전문가 1명, 안전보건공단 3명으로 탄력적 운영

□ 평가 체계 변화

주요 확대 및 강화 내용

(2020년) 현장중심 평가 시행

- ❖ 현장 실행사항 평가지표 중심으로 전환
- ❖ 업무 특성·위험도에 따른 평가지표 구분 (기간산업형, 서비스집중형)
- ❖ 사고사망 감소노력 및 성과 반영 강화

(2021년) 현장중심평가 강화·확대

- ❖ 건설공사 및 도급인 의무 조치 촉진
- ❖ 현장작동성평가 선정대상 확장
- ❖ 안전보건활동 보호대상 확대
- ❖ 기타 이슈사항 평가 반영 등

① 건설발주 사업장 평가항목 개편

- 공사 전반에 걸친 발주자의 안전보건체계·관리·활동·조치 형태로 개편

기존			개편		
분야	평가 항목	세부 지표수	분야	평가 항목	세부 지표수
㉔ 안전보건활동	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2	㉔ 안전보건활동	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3
	2.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2		2.2.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4
	2.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2		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3
	2.4.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2		2.4.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3
	2.5. 발주자의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3		2.5.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2
	2.6.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2		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4
					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 (기존) 6개 평가항목, 13개 세부 평가내용 → (개편) 7개 평가항목, 22개 세부평가 내용

- 안전보건활동분야 「C-2.건설발주 사업장」 배점 20% 상향

※ (기간산업형, 300점 만점) 150점 → 180점, (서비스집중형, 200점 만점) 100점 → 120점

② 도급 평가항목 강화 및 구체화

- 도급사업 관리체계와 안전보건활동의 이행·환류 수준 평가 가능토록 세부 평가내용 고도화

기존			개편		
분야	평가 항목	세부 지표수	분야	평가 항목	세부 지표수
③ 안전 보건 관리	7.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2	③ 안전 보건 관리	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4
	8.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3		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

※ (기존) 2개 평가항목, 5개 세부 평가내용 → (개편) 2개 평가항목, 7개 세부평가 내용

- 시설 유지보수 등 소규모 도급공사를 현장작동성평가 시 포함
- 기타 도급인의 조치 의무에 대한 명확한 전달과 수용도 제고를 위해 용어 수정(작업장 → 직영 및 도급사업장)

③ 안전보건활동 보호대상 확대

-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사업주 포함)”로 확대
-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경비업무 등)를 건강 유지·증진 평가항목에 반영

④ 평가항목 연계평가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등의 현장 이행 수준을 최고경영자 면담 평가항목(㉠-1) 결과에 반영

평가 항목	연계 평가 항목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 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 사고사망 감소 성과

⑤ 현장작동성평가 선정 범위 확대

기존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중점기관 중 선정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현장 ❖ 관계부처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정부경영평가 전체 대상 ❖ 사망사고 다발작업을 보유한 건설공사 발주 현장(공사규모 제한 없음) ❖ 관계부처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

⑥ 현장작동성평가 역량 집중

- 현장작동성에 따라 재해 및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역량 집중

기간산업형	서비스집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안전보건관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위험성평가 ㉠-4. 관리자및근로자등의안전보건활동 참여 ㉠-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 C.안전보건활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 전체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안전보건관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위험성평가 ㉠-4. 안전보건교육·인식·활동참여 ㉠-6.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7.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 C.안전보건활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전체 평가항목

- 기관 유형, 규모,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기간산업형 및 건설발주 사업장은 2일, 서비스집중형 1일 실시

※ 본사만 있는 기관(항공·항만 시설 보유 기관 제외)과 기타공공기관(사고사망 발생기관 제외)은 본평가 시 실시

⑦ 기타 사항

- 건설현장 일요휴무제*, 화재위험작업 화재감시자 배치 등의 이슈사항을 평가 착안사항에 반영

※ 요일별 근무자수 대비 사고사망자 발생 확인 결과(2016년~2018년), 건설업의 경우 일요일이 평일보다 사망 위험도가 약 2배 높음
[중대재해 유형별 현황 분석 연구(2019년 11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IV. 평가 결과 심의 및 협조 사항

1 평가결과 심의 등

□ 실무평가 위원회 운영

- 평가 단계별 실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의 공정성 등 확보

※ 당연직(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및 위촉직(학계 등) 위원 →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선정, 평가결과 이의검토 등

□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고용노동부 담당 국장), 10인 이내 당연직 및 위촉직(노·사·정) 위원 → 평가결과 심의,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평가결과 활용

- 수준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상 「경영관리 범주」 - 「사회적 가치 구현」 - 「안전 및 환경」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안전경영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해당 기관 송부

3 협조 사항

- 평가장소 및 증빙자료 등 사전준비, 경영진·노동자 등 면담지원, 현장평가 시 현장안내 등

※ 평가관련 증빙자료는 전산파일(hwp, pdf 등) 또는 내부 전산망 등 기관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

- 불필요한 부대지원(식사·선물·향응·의전 등) 절대금지

※ 평가 중 청렴도 등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기재부에서 활동 모니터링 실시(예정)

- 기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 평가시기·방법 등은 변동 될 수 있음

참고 1 21년 평가지표 총괄표

기간산업형

분 야	평가 항목	배점(점)		지표적용(개)	
		●	●	본평가	현장 작동성
	합 계	1,000	1,000	23	18
	소 계	250	250	5	0
㉠ 안전보건 경영체제 (5항목)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60	60	○	×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60	60	○	×
	3.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30	○	×
	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50	50	○	×
	5. 안전경영계획 수립	50	50	○	×
	소 계	250	250	8	4
㉡ 안전보건관리 (8항목)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30	30	○	×
	2. 위험성평가	40	40	○	○
	3. 안전보건교육	20	20	○	×
	4.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40	40	○	○
	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20	20	○	×
	6.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20	20	○	×
	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50	50	○	○
	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0	30	○	○
	소 계	300	300	7	14
㉢ 안전보건활동 (14항목)	[㉢-1 직영 및 도급(건설포함) 사업장]	120	300	0	7
	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0	40	×	○
	1.2.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15	40	×	○
	1.3.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	15	40	×	○
	1.4.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25	50	×	○
	1.5.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	25	50	×	○
	1.6.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15	40	×	○
	1.7.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5	40	×	○
	[㉢-2 건설발주 사업장]	180	-	7	7
	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20	-	○	○
	2.2.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20	-	○	○
	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20	-	○	○
	2.4.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25	-	○	○
	2.5.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20	-	○	○
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50	-	○	○	
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25	-	○	○	
	소 계	200	200	3	0
㉣ 안전보건성과 (3항목)	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40	40	○	×
	2. 안전문화 확산	80	80	○	×
	3. 사고사망 감소 성과	80	80	○	×

① 건설공사 발주현장 평가를 받는 경우 ② 건설공사 발주현장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서비스집중형

분 야	평가 항목	배점(점)		적용지표(개)	
		●	●	본평가	현장 작동성
	합 계	1,000	1,000	22	15
	소 계	300	300	5	0
㉠ 안전보건 경영체제 (5항목)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80	80	○	×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80	80	○	×
	3. 안전보건경영 투자	40	40	○	×
	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50	50	○	×
	5. 안전경영계획 수립	50	50	○	×
	소 계	250	250	7	4
㉡ 안전보건관리 (7항목)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30	30	○	×
	2.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건강증진	30	30	○	×
	3. 위험성평가	40	40	○	○
	4. 안전보건 교육·인식·활동참여	40	40	○	○
	5.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30	30	○	×
	6.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50	50	○	○
	7.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0	30	○	○
	소 계	200	200	7	11
㉢ 안전보건활동 (11항목)	[㉢-1 직영 및 도급(건설포함) 사업장]	80	200	0	4
	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5	40	×	○
	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25	60	×	○
	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25	60	×	○
	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5	40	×	○
	[㉢-2 건설발주 사업장]	120	-	7	7
	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10	-	○	○
	2.2.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10	-	○	○
	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0	-	○	○
	2.4.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20	-	○	○
	2.5.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10	-	○	○
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40	-	○	○	
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20	-	○	○	
	소 계	250	250	3	0
㉣ 안전보건성과 (3항목)	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50	50	○	×
	2. 안전문화 확산	100	100	○	×
	3. 사고사망 감소 성과	100	100	○	×

① 건설공사 발주현장 평가를 받는 경우 ② 건설공사 발주현장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참고 2 평가분야별 세부 평가내용

기간산업형

A 안전보건경영체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안전보건경영체제·역량, 안전투자, 안전관리 규정, 안전경영계획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A 안전보건 경영체제 (Safety&Health Management System) • 5개 항목	60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60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3.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 기관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전관리 중점 기관]
	30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2. 안전보건 예산 집행
	50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1. 안전관리규정의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2.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제·개정절차 및 최신화
	50	A.5. 안전경영계획 수립	1. 안전경영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2. 안전경영계획의 구성 및 이행수준

㉔ 안전보건관리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활동 참여, 비상시 대비, 재해조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관리 (Safety&Health Administration) • 8개 항목	30	B.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1. 건강진단 실시·결과·사후관리 2.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의 수립, 측정결과 고위험 공정 등의 작업환경개선 3.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실행 4.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40	B.2.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20	B.3. 안전보건교육	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 안전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3. 안전보건교육 관리 및 지원
	40	B.4.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1. 관리자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수준 2. 근로자(수급업체 포함)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수준 3.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아차사고 발굴 등) 제도 운영
	20	B.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지침 2. 비상시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 3.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시설·장비 관리
	20	B.6.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1.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지침 등 절차의 관리 2.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50	B.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지침 수립 2.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환류 수준 3. 도급사업의 현장 안전보건활동 이행·환류 수준 4.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 이행·환류
	30	B.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㉔ 안전보건활동

사업장 관리상태 및 시정조치 활동 평가를 위한 직영 및 도급사업장과
건설발주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4개 항목	【㉔-1. 직영 및 도급사업장】		
	10 (40)	C.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3.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15 (40)	C.1.2.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1.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2.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실시 및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3.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비정형작업 시, 불시가동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15 (40)	C.1.3.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1. 전기기계·기구·설비·배선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2. 전로 및 근접 작업 등 전기 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25 (50)	C.1.4.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1. 작업장소 및 통로 등에서의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조치 2.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등 위험 방지조치
	25 (50)	C.1.5.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	1. 일반화재 및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화재·폭발·누출예방 조치 2. 인화성 액체·가스 등 제조·취급·저장설비 지역의 폭발위험장소 설정 및 적정 기계기구 선정 구분
	15 (40)	C.1.6.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1.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시설 및 조치 2. 질식위험 작업·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15 (40)	C.1.7.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2. 유해위험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 3.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분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4개 항목	【©-2. 건설발주 사업장】		
	20	C.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1.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기준 수립 및 구성·운영 2.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3. 발주자의 안전보건역량강화 노력
	20	C.2.2. 건설공사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1.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 및 검토 수준 2.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수준 3.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의 설계조건 도출수준 4.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
	20	C.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수준 2. 설계자의 위험성 감소대책 설계반영 수준 3.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
	25	C.2.4.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수준 2.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수준 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 수준
	20	C.2.5.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1.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업무수행체계 2.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50	C.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1.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 2.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관리 수준 3. 작업지휘자 배치 관리 수준 4.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상시 안전보건모니터링 결과
25	C.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2.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관리 3.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대 조치	

※ 괄호 안의 배점은 건설발주 사업장 지표 미적용 기관의 배점

㉔ 안전보건성과[공통]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및 안전문화 확산, 사망사고 감소 성과로 구성

분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성과 (Safety&Health Performance) • 3개 항목	40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1.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2.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80	D.2. 안전문화 확산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2. 주요사업·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해관계자 안전문화 확산 사례
	80	D.3. 사망사고 감소 성과	1. 기관의 직영사업소·발주현장·수급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사업주 포함)자의 사망재해 감소성과

서비스집중형

A 안전보건경영체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안전보건경영체제·역량, 안전투자, 안전관리 규정, 안전경영계획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④ 안전보건 경영체제 (Safety&Health Management System) • 5개 항목	80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80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3.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 기관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안전관리 중점기관]
	40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2. 안전보건 예산 집행
	50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1. 안전관리규정의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2.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제·개정절차 및 최신화
	50	A.5. 안전경영계획 수립	1. 안전경영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2. 안전경영계획의 구성 및 이행수준

㉔ 안전보건관리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활동 참여, 비상시 대비, 재해조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관리 (Safety&Health Administration) • 7개 항목	30	B.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1. 건강진단 실시·결과·사후관리 2.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의 수립, 측정결과 고위험 공정 등의 작업환경개선 3.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30	B.2.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건강 증진활동	1.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2.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시행
	40	B.3.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40	B.4. 안전보건교육·인식·활동참여	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실시·관리 2. 관리자·근로자(수급업체 포함)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3.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아차사고 발굴 등) 제도 운영
	30	B.5.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1.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 교육·훈련, 관련시설·장비관리 2.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 등 절차의 관리
	50	B.6.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지침 수립 2.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환류 수준 3. 도급사업의 현장 안전보건활동 이행·환류 수준 4.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 이행·환류
	30	B.7.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이행 확인

㉔ 안전보건활동

사업장 관리상태 및 시정조치 활동 평가를 위한 직영 및 도급사업장과 건설발주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1. 직영 및 도급사업장】			
	15 (40)	C.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 작업장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 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3.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25 (60)	C.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1. 기계·기구·설비(전기 포함)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2. 추락 및 낙하·붕괴 위험장소의 위험방지조치
	25 (60)	C.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1. 일반화재 및 인화성 물질 등 화재·폭발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2. 화학물질 증독 및 질식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15 (40)	C.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 작업 중지요청제 운영 2. 검사·시험 등의 외부 출장 업무 중의 사고예방조치
【㉔-2. 건설발주 사업장】			
㉔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11개 항목	10	C.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1.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기준 수립 및 구성·운영 2.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3. 발주자의 안전보건역량강화 노력
	10	C.2.2. 건설공사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1.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 및 검토 수준 2.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수준 3.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의 설계조건 도출수준 4.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
	10	C.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수준 2. 설계자의 위험성 감소대책 설계반영 수준 3.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
	20	C.2.4.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수준 2.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수준 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 수준
	10	C.2.5.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1.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업무수행체계 2.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40	C.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1.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 2.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관리 수준 3. 작업지휘자 배치 관리 수준 4.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상시 안전보건모니터링 결과
	20	C.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2.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관리 3.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대 조치

※ 괄호 안 배점은 건설공사 발주현장 지표 미적용 기관의 배점

㉔ 안전보건성과[공통]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및 안전문화 확산, 사고사망 감소 성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성과 (Safety&Health Performance) • 3개 항목	50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1.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2.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100	D.2. 안전문화 확산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2. 주요사업·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해관계자 안전문화 확산 사례
	100	D.3. 사고사망 감소 성과	1. 기관의 직영사업소·발주현장·수급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사업주 포함)의 사망재해 감소성과

참고 3 | 평가지표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관 현황

① 평가지표 유형 분류 기준

- 공공기관의 사업 특성·위험도를 고려하여 기간산업형과 서비스집중형의 2개 유형으로 구분·적용
 - (기간산업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의 사업과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사고발생 위험이 다소 높은 기관
 - ①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건설관리
 - ② 항공·항만·철도·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 유지·운영
 - ③ 석유·전기·가스·난방 등 유·무형의 공공재화의 생산·공급
 - ④ 기타 정부부처에서 요청하는 공공기관 등
 - (서비스집중형) 금융, 보험, 보증 등의 행정서비스, 위락·공원시설관리서비스 및 자격·검정·검사·감독·시험·연구 등 기술서비스 중심업무를 수행하며 기간산업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② 지표유형별 기관현황

- 기간산업형 : 28개 기관

구 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26개)	공기업 I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16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준정부 기관 (2개)	위탁집행형 (2개)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 서비스집중형 : 141개 기관

구 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10개)	공기업Ⅱ (10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92개)	기금관리형 (12개)	공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39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소형 (41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수산물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 공공 기관 (39개)	연구실 (39개소)	광주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코레일유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뇌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나노융합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③ 현장작동성평가 대상기관

< 1 > 작업장(지사, 직영사업소)

□ 대상 선정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정부경영평가 대상 전체 기관과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등급제 주관부처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의 사업장 중,

- 직영 및 도급(건설포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선정:

- ① 자체청사 및 시설(교육장, 수련원, 연구실 등)을 보유 여부
- ②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보유 여부
- ③ 건설공사 이외에 도급사업 실시 여부
- ④ 건설공사 도급사업 실시 여부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기초조사표』와 산재가입현황 등을 활용

□ 직영 및 도급 사업장(건설포함) : 93개 기관

구 분		공공기관명
기간 산업형 (28개)	공기업 I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16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위탁집행형 (2개)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서비스 집중형 (65개)	공기업 II(8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해양환경공단
	기금관리형 (11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28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17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1개)	국방과학연구소

< 2 > 건설공사 발주현장

□ 대상 선정기준

○ 건설 발주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현장 선정

- ① 냉동·냉장창고, PC 및 철골,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층고 6m 이상 거푸집동바리, 2m 이상 굴착, 비계설치·해체, 용접 및 밀폐공간 작업 등 사망사고 다발작업 보유
- ② 타워크레인(이동식 포함), 항타·항발기, 리프트 등 유해·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유
- ③ 굴삭기 및 트럭 등 중장비 작업 보유
- ④ 기타 과거 사고사망 발생 현장 또는 시공사 등

□ 건설발주 사업장 : 42개 기관

구 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21개)	공기업 I (8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13개)	강원랜드(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주),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준정부 기관 (13개)	기금관리형 (4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8개)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1개)	한국광해관리공단
기타공공기관 (8개)		국방과학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